

“정다운요양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점점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빠른 고령화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노인 부양의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다운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저희 정다운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동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도심에 위치한 질 높은 생활권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다운요양원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장 안 은 주 -





건물외관



마당정원 1



마당정원 2



실내 (거실)



기능회복훈련



산책(걷기)운동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

■ 계시근거(9종)



거실

사무실

주방



1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3인실(옆면)

출입구

기관명	정다운요양원	설치일자	2021. 05. 01
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9명
대표자	안은주	협력의료	중앙내과의원, 서울홈케어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136	전화번호 (팩스)	031-591-7702 070-8151-0310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사무실	프로그래밍실	조리실	화장실	세면실 목욕실
시설	2	2	1	1	1	1	2	1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②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24번(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28번(노인인권보호)

1 운영규정의 개요

작성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운영기준 5.운영규정)
구성 (11개 항목)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구성: 5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시설의장, 시설거주자대표, 시설종사자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주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정기회의: 분기별1회(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 ▶ 심의·보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름

2 종사자 근무체계

종사자 총 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사무국장 계약의
8	1	1	4	1	1
야간근무자 매일 22:00~06:00					

** 근무인원은 요양원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필요영역)	서비스내용(필요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욕단장/ 옷갈아 입기도움/ 신체청결도움/ 식사도움/ 화장실이용도움/ 이동도움/ 낙상예방(관리)/ 배뇨·배변관리/ 복약도움/ 신체기능유지 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활동프로그램 등 인지관리지원
치매관리지원	환경조성/ 위험요소제거/ 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관찰을 통한 행동변화 사전예방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발음연습, 필담)/ 사회적지지 체계연계와 관계망연결/ 말벗 및 격려로 정서적 도움
개인활동지원	산책(실내 등) 도움/ 병원동행
건강관리	건강상태 확인/ 기초건강관리/ 감염간호/ 투약관리지도/ 관절오그라들 예방운동/ 협약병원 진료의 진료지원 및 의료기관 의뢰 등
간호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욕창관리/ 비위관 관리/ 통증관리/ 도뇨관관리/ 회음 부간호/ 배설관리(관장등)/ 당뇨발 관리/ 구강간호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여가·정서프로그램/ 사회 적응 활동 프로그램
시설환경관리	침구리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응급서비스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뇌졸중 전조증상 등 응급상황 대처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대상	항목별비용(금액)	비 고
식사재료비 간 식	1식3,500원(10,500원/1일) 1회 1,000원(1,000원/1일)	식대(경관영양식 포함), 간식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일5,000원	추가비용 수납
진 료 비 외	진료비, 약제비 등	비급여 발생분
이 · 미용료	무료 또는 소요비용(실비)	자체 및 자원봉사자 활용

5

건물면적	198㎡	
대 지	507㎡	
기타 주요설비	▶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벨, 누전경보 ▶ 피난시설: 자동계파장치, 유도등, 비상조명등 ▶ 응급의료기기: 산소통, 흡입기등 ▶ 기타: 전기설비(에어컨, 선풍기), 가스설비(난방보일러, 주방가스)	

6

구 분	가입기관(보험사)	보상내용
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화재손해(건물, 시설, 집기비품) 구내폭발파열손해 배상책임(대물, 부상, 사망및후유장해)
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보험	노인요양시설 시설소유자 영업배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문인배상 음식물

※보험가입증권 별도 게시

7

평가년도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 기 관 운 영: 기관운영과 종사자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환 경 및 안 전: 안전한 시설설비, 응급상황 대처 기반, 수급자의 생활환경과 위험도 등을 평가 ▶ 수급자권리보장: 수급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존중하며 윤리적인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평가 ▶ 급여 제공 과정: 기관이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장기요양 급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등을 평가 ▶ 급여 제공 결과: 수급자의 만족도 및 상태호전 여부 등을 평가						

8 급여제공 직원



9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체조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행사 진행 ▶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 ▶ 지역사회 자원연계(자원봉사 등) 지원 진행					

10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노인학대 신고기관	수사기관(112 등), 행정기관(시군구청),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

※ 노인인권보호지침 별도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장기요양입소비용 안내 (2025)

◇ 1일 수가

등 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90,450	72,480
2등급	83,910	67,250
3~5등급	79,240	62,000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본 인 부 담 금	1등급	434,880	260,920	173,950
	2등급	403,500	242,100	161,400
	3~5등급	372,000	223,200	148,800
식재료비		식대비: $3,500 \times 3\text{식} = 10,500$ 간식비: 1,000		345,000
합 계	1등급	779,880	605,920	518,950
	2등급	748,500	587,100	506,400
	3~5등급	717,000	568,200	493,800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비(촉탁진료비, 약제비, 개인의료비)는 추가됨

■ 필수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건강진단서 (간영, 폐결핵, 매독, 에이즈 전염병 여부기록)
5. 진단서, 소견서, 투약처방전
6. 주민등록증(수급자,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 입소준비물 ■

1. 복용중인 약
2. 속옷, 편한 옷, 양말, 실내화
3. 칫솔, 개인물통
4. 개인위생용품 및 필요물품

♣ 문의 031-591-7702 , 010-5452-6051 정다운요양원 ♣